

韓國家族類型別 欲求와 資源에 관한 研究

李 容 敬*

I. 序 論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은 대가족제도로써 가족윤리와 가족문화를 통하여 가족과 친족의 연대 및 복지기능을 잘 수행하였다. 이러한 가족기능은 가족문제와 가족욕구를 해결하고 충족시킬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예방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5여년 동안 공업화, 도시화, 가치관의 변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가족제도와 기능은 많이 훼손되고 변화되었다. 확대가족은 감소되고 핵가족이 증가되었으며, 부부의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결손가족은 개별적인 가족문제를 넘어서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족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가족의 욕구와 문제가 가족유형에 따라서 상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들 가족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가족의 유형은 분류기준에 따라서 다양할 것으로 보이나,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일차적인 관심대상인 빈곤가족과 결손가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러나 빈곤가족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결손가족의 욕구와 문제를 정상가족의 그것과 비교하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욕구와 문제는 욕구충족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거나 욕구충족의 기제가 해체될 때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의 유형별로 자원을 파악하며, 가족유형별 자원을 바탕으로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복지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 韓國福祉政策研究所 研究員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필자는 문헌조사와 사회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¹⁾ 가족유형의 변화는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가족의 자원과 욕구 및 문제는 도시가계연보등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서 파악하였다.

II. 本 研究의 分析틀

결손가족은 항상 존재하여 왔지만, 전통적인 확대가족하에서는 사별로 인한 결손이 대부분이었고 친족의 보호와 부양으로 사회문제화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로 사회구조와 가족구조가 변화됨에 따라서 확대가족의 보호와 부양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고 지리적인 이동이 심하기²⁾ 때문에 이웃에 의한 부조의 기능도 약화되어 핵가족내에서의 자원교환으로 자원교환의 망이 축소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별거 등은 가족의 복지기능을 크게 약화시켜서 개별가족이 해결하기 어려운 가족문제를 낳고, 이는 사회문제로 비화되기 쉽다.

한편 가족의 유형에 따라서 자원의 동원능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결손가족에서도 편모가족과 편부가족의 욕구와 문제가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가족의 욕구와 문제에 바탕을 둔 가족복지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유형에 따른 자원 욕구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이, 배우자와의 이별(사별, 이혼, 별거 등)로 인하여 결손가족이 되고 주소득자와 가사담당자의 상실과 자조조직 및 사회

1) 사회조사자료는 다음 논문의 조사결과에서 나왔다. 金泳謨·李容敬, 韓國家族構造의 變化와 家族福利政策의 基本構想, 「社會政策研究」 제 9집, 韓國福祉政策研究所, 1987, p.1

2) 1980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에 의하면 전체 국민중에서 원거주지(시·도)가 출생지(시·도)와 일치하지 않은 사람은 30.2%이고, 서울과 부산의 경우는 각각 58.5%, 57.3%로 토박이보다 이주자가 더 많다. 원거주지가 5년전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은 사람은 전체의 23.2%이고, 서울과 부산의 경우는 각각 38.9%, 33.1%이다. 또한 지리적인 이동을 주거단위로 보면 자가소유자보다 세입가구의 이동이 심한데, 한 조사에 따르면 입차가구의 이동비율은 연간 0.5회이고 자가소유가구의 그것은 0.3회이다.

경제기획원, 「1980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1982

대한주택공사, 「주택수요 및 임대주택에 관한 연구」, 1983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배우자와의 이혼 → 자원의 축소 및 자원망의 해체 → 욕구와 문제의 발생 → 가족복지정책의 모색			
사 별	· 주소득자의 상실	· 생계문제	· 가족부양수당 및 가
이 혼	· 가사와 아동양육자의 상실	· 자녀양육 및 자녀	· 출수당제도화
별 거	· 자조조직의 축소 및 해체	· 교육문제	· 가정봉사원제도와
	· 사회자원의 축소 및 해체	· 가사와 취업으로	· 탁아사업의 제도화
		인한 이중역할	

자원이 축소되면 저소득으로 인한 생계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가사와 취업의 이중역할로 인한 문제등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욕구와 문제에 따른 가족복지정책의 모색은 저소득 모자가족을 위한 가족수당과 탁아사업 그리고 부자가족을 위한 가정봉사원제도의 도입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다음 각장에서 가족유형별 자원, 욕구 및 문제를 분석하고 가족복지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家族類型의 變化

지난 4 반세기 동안 가족유형의 변화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예컨대 평균 가족수는 '60년 5.71명에서 '85년에는 4.16명으로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변화하였고, 세대별 구성은 3세대 이상은 감소하고 (전체의 28.5%에서 14.9%) 2세대 (64.0%에서 67.0%)와 1세대 (7.5%에서 9.5%) 그리고 단독세대 ('66년 2.3%에서 6.9%)가 크게 증가하여 확대가족에서 핵가족화되고 있다. 거주지역별로는 농촌가족은 감소(72.0%에서 34.6%)하고 그만큼 도시가족이 증가하였으며 가족의 수입원도 사업소득(자영업)에서 임금소득(임노동)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가족유형의 변화중에서도 사회복지의 일차적 관심대상인 빈곤가족과 결손가족을 보면, 절대적 빈곤가족은 크게 감소('65년 41.8%에서 '80년 10.0%)하였으나 원부모 가족('65년 7.9%에서 8.6%)과 여성세대주가족('80년 14.7%에서 15.7%)은 증가하였다. 특히 결손가족의 변화는 가족의 결합법위별 유형의 변화에서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결손가족의 대표적인 유

형인 편부모자녀가족은 '66년 전체의 7.9%에서 '70년 10.6%까지 증가되었다가 다시 감소되어 '85년 현재 8.6%이다. 또한 단독가구와 부부가족('66년 4.5%에서 7.5%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³⁾

이러한 가족의 결합범위별 유형의 변화는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로 요약할 수 있으나, 결손가족의 원인은 사별에서 이혼으로 그 추세가 변화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세 이상 여성의 연령계층별 혼인상태를 보면 '70년의 경우 사별과 이혼이 각각 15.2%, 0.9%에서 '85년의 경우 12.5%, 0.7%로 사별과 이혼의 비율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별 : 이혼의 비율은 젊은층(30대·40대)에서 크게 변화되어서 이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유형의 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사회학에서 활발히 논의되었으나 사회복지에서의 관심은 결손가족의 경우에 국한된 것과 세대별 표준모형을 설정하여 결손가족을 제외시킨 연구가 있었을 뿐 결손가족과 일반가족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⁴⁾ 이러한 각 유형의 변화가 가족의 자원,

(표 1) 15세이상 여성의 연령계층별 혼인상태 (단위 : %, 천명)

연령	1970					1985							
	연도	혼인 상태	유배우	사 별	이혼	미 혼	합계(실수)	유배우	사 별	이혼	미 혼	합계(실수)	
15~19			2.8	0.1		97.1	100.0(1,515)	0.9				99.1	100.0(2,039)
20~24			42.3	0.2	0.3	57.2	100.0(1,224)	27.8	0.05	0.06		72.1	100.0(2,053)
25~29			88.4	0.9	1.0	9.7	100.0(1,107)	80.9	0.3	0.4		18.4	100.0(2,043)
30~34			94.6	2.4	1.6	1.4	100.0(1,084)	93.3	1.3	1.1		4.2	100.0(1,525)
35~39			91.9	5.9	1.8	0.4	100.0(939)	93.3	3.4	1.7		1.6	100.0(1,257)
40~49			81.1	17.3	1.5	0.2	100.0(1,427)	83.2	9.7	1.5		0.5	100.0(2,125)
50~59			55.7	34.7	0.7	0.1	100.0(965)	71.2	27.7	0.9		0.2	100.0(1,593)
60이상			29.4	70.2	0.3	0.1	100.0(1,094)	35.2	64.3	0.3		0.1	100.0(1,653)
합 계			59.1	15.2	0.9	24.8	100.0	53.7	12.5	0.7		28.1	100.0
(실수)			(5,476)	(1,408)	(83)	(2,298)	(9,259)	(8,432)	(1,789)	(100)	(4,034)	(14,354)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세스보고」

3) 金泳模·李容敬, 前掲論文, p.11 표 7 참조.

4) 가족에 관한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에서의 연구현황은 사회정책연구 제 9집 '가족에 관한 연구현황'을 참조할 것.

욕구 및 문제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장을 바꾸어서 살펴본다.

IV. 家族類型別 資源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가족의 욕구와 문제가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제도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충족되고 해결되면 사회문제화되기 어렵다. 그러나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확대가족은 크게 감소하고 핵가족이 증가함으로써 개별가족이 자신의 욕구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증가되고 있다. 이는 산업화로 인하여 개별가족의 소득과 주소득자의 노동력(정보, 기술)은 향상되었으나 친족과 지역사회의 연대기능이 약화되고⁵⁾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해야 할 복지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양해야 할 아동과 노인이 많은 가족과 주소득자나 가사담당자가 상실된 절손가족은 심각한 국면에 빠지게 된다.

가족의 욕구와 문제가 자원의 양이 적고 자원의 망이 해결됨으로써 발생된다는 점에서 가족유형별 자원의 양을 월평균소득, 세대주의 직업과 학력을 통해서 살펴보고 자원망을 자조조직과 사회보험등 사회자원을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 가족의 월평균소득을 보면 도시가구의 월평균소득인 50만원 이상인 가구가 53.1%로 가장 많고 다음은 17~50만원(39.3%)이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인 17만원보다 낮은 가구가 7.5%이다.⁶⁾ 이를 세대주의 혼인상태별로 보면 절대빈곤선 이하는 별거가 23.1%로 가장 많고 다음은 미혼(22.7%), 사별(20.9%), 독신(14.3%), 재혼(12.5%)이고 평균보다 낮

5) 이웃관계는 도시에서 크게 약화되었다. 도시에서 이웃간 서로 왕래하는 경우는 전체의 45% 정도이고 인사정도 하거나 얼굴만 아는 정도가 약 50%이며 전혀 무관심한 경우도 5%정도이다. 서로 왕래의 정도도 풀앗이, 김장때의 노력봉사, 자녀돌보기와 같이 전통사회에서 볼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을 크게 감소되었다.

김영모·김성천, 도시민민의 생활상태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연구』 제 8집,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6, p. 57

김영모, 『한국인의 복지의식』, 일조각, 1980

6)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월평균소득은 '86년 4/4월계 505,641 원이고, 정부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1인당 월평균소득이 43,000 원으로 4인가족인 경우 172,000 원이다.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1986)』, 1987

보건사회부, 『1987 보건사회』, 1987

은 경우는 이혼이 88.9%로 가장 많고 다음은 독신(71.4%), 동거(66.7%), 미혼(59.1%), 사별(58.9%), 별거(46.2%)의 순으로 기혼—동거(45.9%) 가족보다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신, 미혼과 동거인 경우는 부양가족이 적기때문에 소득이 다소 낮아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으나 사별로 인한 결손가족은 부양가족이 많기 때문에 낮은 소득으로 인한 생계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혼인상태별로 소득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가구주의 성별·혼인상태별로 직업이 상이하고 직업간에 임금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전체 직종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볼 때 직종별 임금지수는 행정관리직이 256.0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전문기술직(175.9), 사무직(115.4), 농림수산업(107.4), 판매직(102.6), 서서비스직(74.8)의 순이다.” 그런데 사별과 이혼상태에 있는 사람은 유배우자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직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의 경우 유배우자는 임금수준이 높은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 사무직 종사자가 많은데 반하여, 사별과 이혼자는 농림수산업이 많다. 여자의 경우에도 사별과 이혼자는 서비스직과 판매직이 상대적으로 많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는 전체의 6할 이상이 농림수산업이고 사별인 여성의 6할 정도가 농림수산업인데 비하여 이혼여성의 6할이상은 서비스직과 판매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혼여성의 경제활동율은 매우 높아서 전체의 73.5%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별 여성의 32.6%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극히 대조적이다. 이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은 것은 사별여성보다 나이가 젊고 자녀등 보조소득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나 높은 취업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다는 것이 문제이다.

혼인상태별로 소득이 불명등하고 취업직종이 다른 이유는 그들의 노동력의 차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유형별로 노동력의 차이를 세대주의 학력을 통해서 보면, 노동력의 질이 낮아서 직업 선택의 폭이 좁은 국졸이하인 경우는 편부와 편모가족이 각각 44.8%, 41.6%로 가장 많고, 부부 혹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

7) 노동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1985)」, 1986

〈표 2〉 가구주 성별·혼인상태별 직업

(단위: %, 천명)

가구주 성별	직업 혼인 상태	직업									경제활동인구 (100.0)	비경제활동인구/ 15세 이 상 미구
		전 기술직	문 행 관리직	정 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	비 지 수 산 지	농 림 수 산업	생 산 및 건설 노 무직		
남 자	미혼	3.3	0.2	8.0	7.2	4.4	25.4	36.7	14.7	2,177	49.4	
	유배우	5.5	2.0	9.9	13.0	5.3	31.6	28.8	3.9	6,293	8.8	
	사별	2.1	0.9	3.1	9.9	3.5	55.3	18.5	6.7	98	53.3	
	이혼	3.2	1.0	4.9	11.3	4.9	36.1	29.0	9.6	33	16.1	
	소계	4.9	1.5	9.3	11.5	5.0	30.3	30.7	6.7	8,603	24.9	
	(실수)	(419)	(132)	(803)	(991)	(434)	(2,611)	(2,640)	(575)		(2,855)	
여 자	미혼	4.9	0.01	20.5	4.9	9.6	11.3	37.3	11.4	1,759	50.9	
	유배우	2.6	0.04	1.4	13.9	7.6	62.7	7.9	3.9	2,593	64.0	
	사별	1.0	0.1	0.7	14.9	12.4	58.1	8.2	4.6	537	67.4	
	이혼	3.1	0.2	2.4	20.8	40.3	10.5	12.7	10.0	56	36.5	
	소계	3.3	0.04	8.1	10.9	9.2	43.3	18.5	6.7	4,949	60.5	
	(실수)	(162)	(2)	(400)	(539)	(455)	(2,146)	(914)	(332)		(7,586)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제 2권 3-1 경제활동, pp. 438~439

은 고졸이상인 비율이 각각 전체의 73.6%, 72.5%이다. 이는 부부 혹은 부부와 미혼자녀만 사는 가족의 세대주의 연령이 젊기 때문이지만, 젊은가족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적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의 자원은 세대주와 가족의 소득이 가장 중요하지만, 다른 가족과의 자원의 이전도 매우 중요하다.⁸⁾ 가족간의 자원이동은 혈연, 지연, 학연, 직연 등 각종 관계망을 통해서 발달한 자조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조조직은 돈을 목적으로 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 관혼상제시 상호부조를 하고 여가를 함께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등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혼합된 것으로 화폐적 자원이전 뿐만아니라 비화폐적 자원이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주의'가 생활의식과 사회활동에 깊숙히 내면화된 사회에서는 자조조직을 통한 자원의 이전이 매우 큰 의미

8)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 505,641원은 근로소득 86.1%(가구주근로소득이 가구소득의 76.0%), 사업 및 부업소득 2.7%, 기타소득 11.3%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가족과의 자원의 이전은 기타수입(저금받은 금액, 제당금액, 빌린돈, 월부 및 외상)과 기타지출(저금, 계부은 금액, 빌린돈 같은 금액, 월부의상같은 금액)에서도 파악할 수 있으나 좁은 의미의 사적인 자원이동은 경조비에서 파악할 수 있다. 도시가구의 월평균 경조비는 6,273원으로 소비지출의 1.8%이다.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1986)」, 1987

〈표 3〉 가족형태별 자조조직 가입율

가족형태	자조조직	혈연	지연	학연	직연	합계(실수)
부	부	31.6	10.5	42.9	21.1	100.0 (133)
부모·미혼자녀		31.3	21.5	39.5	28.5	100.0(1,836)
편모·미혼자녀		27.0	5.6	34.8	15.7	100.0 (87)
편부·미혼자녀		34.5	17.2	24.1	24.1	100.0 (29)
부모·미혼자녀 부모의 형제자매		46.8	16.9	44.2	23.4	100.0 (77)
부모·기혼미혼자녀		42.2	28.9	36.0	21.8	100.0 (339)
조부모·편모·자녀		41.2	17.6	52.9	29.4	100.0 (17)
조부모·편부·자녀		50.0	25.0	25.0	25.0	100.0 (8)
기	타	37.8	18.0	40.7	23.8	100.0 (172)
무	응답	33.3		33.3		100.0 (3)
합	계	33.5	20.9	39.1	26.4	100.0
(실수)	(수)	(906)	(566)	(1,058)	(714)	(2,703)

가 있다. 먼저 혈연, 지연, 학연, 직연 등의 자조조직 가입율을 보면 표 3과 같이 학연조직(동창회, 동기회등)이 39.1%로 가장 많고 다음은 혈연조직(종친회, 화수회등) 33.5%, 직연조직(상조회, 공제회, 입사동기회등) 26.4%, 지연조직(향우회등)의 20.9%순이다. 이를 가족형태별로 보면 혈연조직과 지연조직에의 참여율은 3세대가족에서 높고 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은 학연과 직연조직에의 참여율이 높다.⁹⁾ 결손가족은 정상가족보다 자조조직에의 참여율이 대체적으로 낮는데 특히 편모가족은 학연조직을 제외한 모든 조직에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부모가족 특히 편모가족은 소득이 낮을뿐만 아니라 자조조직에의 참여율이 낮아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을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는 가족의 욕구와 문제가 가족과 친척 그리고 자조조직을 통해서 해결되어 왔으나 산업화 도시화로 핵가족이 더욱 보편화되고 지역공동체가 해체됨에 따라서 직장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

9) 자조조직의 망은 혈연과 지연에서 학연과 직연으로 급속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자조조직은 계인데, 계의 대부분은 계원간의 상부상조나 利權을 위한 것으로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부탁수준에서 친분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교육기간이 연장되고 직장을 통한 인간관계형성이 증시되면서 자조조직의 망도 변화된 것이다.

조선총독부, 「민정조사자료」 제17집 朝鮮의 '契', 1926

김영모, 「농촌지역사회조직론」, 민조사, 1969

〈표 4〉 가족형태별 사회자원 이용율

가족형태	사회자원	공적 연금 보험	의료 보험	사보 험	생활 보호	의료 보호	장기 저축	기 타 이 상	기 타	무 응 답	합계(실수)	
부	부	3.8	48.9	12.8	1.5	2.3	20.3	8.3	11.5	17.0	100.0	(133) $\chi^2=460.$
부모·미혼자녀		5.5	51.3	21.7	0.8	1.8	26.5	7.7	11.7	11.8	100.0	(1,836) 34521
편모·미혼자녀		2.2	36.9	11.2	4.5	6.7	16.8	13.5	8.9	21.6	100.0	(89) $df=369$
편부·미혼자녀			58.5	17.2	3.4	3.4	27.5	3.4	6.8	24.4	100.0	(29) $p=0.0008$
부모·미혼자녀 부모의 형제자매		2.6	52.0	20.8		1.3	31.2	15.6	15.6	12.8	100.0	(77)
부모·기혼미혼자녀		6.3	54.6	18.9	0.9	1.8	21.5	6.5	16.0	12.0	100.0	(339)
조부모·편모·자녀		5.9	47.1	29.5			17.7	5.9	11.8	29.3	100.0	(17)
조부모·편부·자녀			50.0	37.5			25.0		25.0	25.0	100.0	(8)
기 타		4.0	55.7	18.7	0.6	1.2	24.9	12.8	6.5	12.2	100.0	(172)
무 응 답			33.3				33.3		33.3		100.0	(3)
합 계		5.1	52.4	21.3	0.9	1.9	25.3	8.3	10.1	13.1	100.0	(2,703)
(실 수)		(133)	(1,417)	(577)	(25)	(51)	(633)	(225)	(272)	(353)		

비고: 자료처리시에 공적 연금수혜자는 모두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기타 2개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적연금+사보험, 공적연금+장기저축, 공적연금+사보험+장기저축, 의료보험+사보험, 의료보험+장기저축, 의료보험+사보험+장기저축은 별도로 처리하여 해당 항목에 합산하였다. 그러므로 기타 2개이상은 앞에서 열거한 것을 제외한 조합을 말한다.

제도가 가족과 시장의 기능을 보완, 지원하거나 대체하고 있다. 선진 산업국가들은 가족의 복지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찌기 노령, 산재, 실업, 질병 등 사회적 사고에 관한 사회보험을 제도화하고 가족수당과 조세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사회보험의 역사가 일천하고 적용 범위가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근로자나 공무원, 군인, 교원 등 특수직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의 복지기능을 강화시키기에는 크게 미흡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자원조차도 정상가족에게 유리하고 결손가족에게 불리하게 분배되어 있어서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가족이 사적 시장을 활용하여 자원을 통시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을 하고 있는 사보험과 재형저축 등 장기저축도 사적 자원의 여력이 있는 정상가족이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자원의 이용율을 보면 표 4와 같이 의료보험이 52.4%로 가장 높고 다음은 장기저축(25.3%), 사보험(21.3%), 공적연금보험(5.1%)의 순이다. 이를 가족형태별로 보면 편모가족은 공적부조인 생활보호와 의료보호를 제외한 모든 사회자원의 이용율에서 편부가족과 정

상가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보험과 연금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 일정규모 이상의 직장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자산조사에 바탕을 둔 공적부조를 제외한 다른 사회자원은 여유 자원이 있어야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V. 家族類型別 欲求와 問題

가족의 욕구와 문제는 인간의 일차적 욕구라고 알려진 의식주와 현대산업 사회에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건강한 신체와 지적 능력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독특한 문제로서 부부갈등과 고부갈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족의 욕구는 가족의 결합범위에 따라서 매우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결합범위에 따라서 구성원이 달라지고 가족주기가 상이할 것이므로 구성원의 역할과 기대가 상이하고 가족의 당면과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가족의 가장 큰 가족의 욕구와 문제는 가족의 건강 혹은 질병에 관한 욕구가 17.7%로 가장 강하고, 다음은 자녀교육 및 자녀비행(15.2%), 주택마련(14.5%), 생계곤란(9.7%), 취직문제(5.1%)의 순이고 부부갈등과 고부갈등은 가장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의 욕구와 문제는 표 5와 같이 가족형태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가장 절실한 문제로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가족은 편모가족이 19.1%로 가장 많고 다음은 편부가족, 3세대가족의 순이다. 한편 편부가족과 3세대가족은 가족의 건강 혹은 질병에 관한 욕구와 문제가 많고 부부가족은 주택마련, 부모·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은 자녀교육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세대가족과 편부가족에 노령자가 많기 때문에 건강에 관한 욕구가 강하고 다른 가족유형도 자기 당면한 과제가 상대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가족의 욕구와 문제에 따라서 자원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가족문제가 없는 가족은 생계곤란을 호소하

〈표 6〉 가족형태별 가장 큰 가족욕구와 문제

가족형태	욕구와 문제		생계 곤란	취직 문제	건강 유병	자녀 교육	주택 마련	부부 갈등	고부 갈등	기타	무응 답	합계(인수)
	없다	있다										
부	34.6	11.3	6.0	15.0	3.8	23.3		0.8	4.5	0.7	100.0	(133)
부모·미혼자녀	27.5	8.7	4.4	16.5	18.5	15.5	2.1	1.5	3.6	1.7	100.0	(1,836)
원모·미혼자녀	27.0	19.1	6.7	15.7	10.1	10.1	2.2		5.6	3.5	100.0	(89)
원부·미혼자녀	17.2	13.8	10.3	24.1	10.3	10.3	3.4		10.3	0.3	100.0	(29)
부모·미혼자녀 부모의 형제자매	28.6	6.5	3.9	20.8	19.5	15.6	2.6		2.6	2.5	100.0	(77)
부모·기혼미혼자녀	30.4	13.0	8.3	22.1	7.7	8.0	1.2	2.7	5.3	1.3	100.0	(339)
조부모·원모·자녀	17.6	11.8	5.9	35.3		17.6		5.9	5.9		100.0	(17)
조부모·원부·자녀	62.5	12.5			12.5	12.5					100.0	(8)
기	32.0	7.6	4.1	20.3	8.1	12.2	2.3	2.9	7.6	2.9	100.0	(172)
무	응	답			66.7						100.0	(3)
합	계	28.4	9.7	5.1	17.7	15.2	14.5	1.9	1.6	4.3	1.6	100.0
(설 수)		(769)	(261)	(137)	(478)	(412)	(392)	(52)	(43)	(115)	(44)	(2,703)

$\chi^2=165.83337, df=81, p=0.0000$

〈표 6〉 가족문제별 사회자원

가족문제	사회자원		공적 연금 보험	의료 보험	사 보험	생활 보호	의료 보호	장기 저축	2계 이상	기타	무응 답	합계(인수)
	없다	있다										
없	다	6.7	58.8	25.0	0.4	0.9	29.0	9.4	8.7	9.2	100.0	(769)
생	계 곤 란	3.8	32.9	10.7	4.6	6.1	14.1	3.4	16.7	29.0	100.0	(261)
취	직 문 제	8.8	58.5	16.1		1.5	15.9	10.2	14.0	10.7	100.0	(137)
건	강 유 병	4.7	53.6	23.6	0.6	1.2	26.5	8.4	9.7	13.5	100.0	(478)
자	녀 보 육	5.3	48.5	25.0	1.0	2.7	22.1	9.7	9.7	12.7	100.0	(412)
주	택 마 련	2.3	45.2	17.4	0.8	1.6	31.9	7.9	15.8	7.5	100.0	(392)
부	부 갈 등	3.8	48.1	23.1		1.9	27.0	11.5	15.4	7.7	100.0	(52)
고	부 갈 등	4.7	53.6	18.6		2.3	25.6	4.7	25.4	4.7	100.0	(43)
기	타	3.4	54.6	20.8		0.9	22.6	6.1	7.0	17.4	100.0	(115)
무	응 답	6.9	38.8	9.2			18.3	2.3	6.9	36.0	100.0	(44)
합	계	5.1	52.4	21.3	0.9	1.9	25.3	8.3	10.1	13.1	100.0	
(설 수)		(138)	(1417)	(577)	(25)	(51)	(633)	(225)	(272)	(353)		(2703)

$\chi^2=839.02966, df=369, p=0.0000$

는 가족보다 공적부조를 제외한 모든 자원에 있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욕구와 문제는 자원의 불충족상태에서 유발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등 사회자원도 욕구보다는 능력에 따라서 분배됨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자녀교육과 주택마련을 가족욕구라고 응답한 가족의 경우 각각 사보험과 장기저축의 이용율이 25.0%과 31.9%로 가장 높아서 가

족의 당면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보험과 재형지축 혹은 주택청약저축에 많이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가족의 욕구와 문제가 적거나 자녀교육과 주택욕구가 강한 가족은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자원이 욕구에 의해서 보다는 능력에 의해서 분배되기 때문에 자원의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절손가족 특히 편모가족은 생계등 일차적인 욕구도 충족되지 않은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가족을 일차적 대상으로 하는 가족복지정책의 모색이 절실히 요망된다.

VI. 家族福祉政策의 摸索

지금까지 가족유형별 자원, 욕구 및 문제를 살펴보았다. 가족의 형태별 유형에 따르면 사별, 이혼, 별거로 인한 편부모 가족은 다른 정상가족에 비하여 자원의 양이 적고 자원의 망은 축소되며 이용 가능한 사회자원도 적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절손가족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편모가족은 다른 어떤 가족보다 통제 가능한 자원은 적고 욕구와 문제도 생계곤란과 같은 일차적인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자원이 욕구보다는 능력에 따라서 분배되고 사회보험과 같은 공적 자원도 욕구보다는 기여능력에 따라서 제도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은 자활능력이 없는 아동과 노인을 다른 어떤 사회체제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부양하기 때문에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족의 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개별 가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족문제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여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기존의 사회보험과 다른 사회자원으로도 가족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가족, 특히 절손가족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가 절실하다.

선진 산업국가에서는 가족의 자녀보호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찌기 가족수당을 제도화하였다. 가족수당은 몇몇 대기업이 대가족을 가진 노동자에게 부가급여로 주기 시작한 19세기 유럽에서 기원되었으나,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많은 유럽국가에서 제도화되고 제 2차 세계대전후에 크게 보급되

어 현재 미국을 제외한 모든 산업국가를 포함한 세계 66개국이 이 제도를 가지고 있다. 가족수당은 특정수의 자녀를 가진 모든 주민에게 수당을 주는 보편적인 것과 임노동자(어떤 경우에는 자영업자 포함)에게만 수당을 주는 것이 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전자의 경우 일반세입에서 충당되고 후자는 전체 혹은 상당부분을 고용주가 기여하고 나머지를 국가가 기여함으로써 충당된다. 급여자격은 공통적으로 가족의 크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족의 소득과 관련된다. 고용관련체제를 가진 50여개국과 보편적 체제를 가진 12개국은 첫자녀부터 수당을 준다. 몇몇 나라에서는 고용되지 않은 아내나 다른 성인부양가족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연령조건은 다양하지만 통상 법정학교 졸업연령 혹은 최저노동연령과 연결되어서 대개 14세에서 18세사이이다. 자녀수에 따른 급여의 양은 제도도입 의도에 따라서 나라마다 상이한데 대부분의 국가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유자격아동에 대해서 일정한 양을 주거나 자녀가 증가될 때마다 증액 지급된다.

이러한 선진국의 가족정책에 비추어 우리나라 가족복지관련정책을 보면 사회보험은 능력에 따라 제도화되어 있고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구빈법시대의 발상을 벗어나지 못한 구호위주이며 가족에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도록 악화된 기아, 부랑아, 윤락녀, 무의무탁노인만을 시설수용보호하는데 그치고 거택보호와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은 명목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가족의 욕구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할 공공주택이 소자녀 단산가족에게 우선 분양되고, 자녀가 2인을 초과하면 소득세의 인적 공제액과 자녀 학자금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즉 산아제한 정책은 있어도 가족복지정책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의 모색은 각종 기존의 가족복지관련정책이 가족의 욕구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산아제한 정책 등은 개선하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제도로써 가족수당과 가족부양수당을 모색하고 조세감면혜택의 범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족수당에 대한 세대주의 의견은 아동 및 노인수당이 53.7%이고 노인수당만이 38.4%, 아동수당만은 3.8%이며 불필요하다는 사람은 3.1%에 불과하다. 이것을 볼 때 우리나라 가족수당에 대한 세대주의 견해는 아

동수당과 노인수당 모두 혹은 노인수당만이라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유형별 가족의 자원과 욕구 및 문제를 보면 3세대 가족보다는 결손가족의 자원이 적고 욕구가 크기 때문에 가족수당은 아동을 위한 수당부터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연금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88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도 2008년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의 공제혜택은 임노동자에게만 주고 노인들을 더욱 많이 부양하고 있는 자영업자 특히 농어민은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고른 혜택이 갈수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가족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겠으나 국민소득의 수준과 편부모가족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국민전체를 위한 가족수당은 당분간 보류하더라도 요보호가족을 위한 가족부양수당의 제도화는 시급하다고 하겠다. 가족부양수당은 기업관련적 체제보다 자산조사를 감안한 보편적 체제가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이 고용관련적 체제로 도입 발전되어 가족유형간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편부모가족은 연령과 성차별로 인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며, 요보호가족의 문제는 국가가 맡는 것이 사회정의에도 옳바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일정소득(예컨대 전체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의 3/5)이하의 가족이 부양아동(급여대상 아동의 연령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고 중학교 졸업연령과 일치하는 14세 미만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을 지닌 경우에는 매월 일정액(예컨대 5,000원)의 아동수당을 국가가 우체국을 통해서 예금통장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예컨대 '85년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전체 9,571천가구 중 8.0%(763천가구)는 가구주가 미혼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면 유배우가 88.5%이고 사별과 이혼이 각각 10.3%(911천가구), 1.2%(106천가구)으로 결손가족은 11.5% 1,017천가구이다. 이중에 약 30%가 30만원미만¹⁰⁾이라면 가족수당 대상가

10) 1986년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은 505,641원이고 이것의 3/5은 303,385원이다.

족은 305천가구이다. 한편 여성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편부모가족당 종아동수는 4.0명이고 그중 미혼자녀는 3.2명, 18세 미만의 자녀는 1.9명임으로 14세 미만의 아동은 1.4명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면 편부모가족을 위한 부양수당에 필요한 금액은 편부모가족의 30% (305천가구) × 14세 미만 자녀수 (1.4명) × 월별 아동수당 (5,000원) × 1년 (12개월) = 25,620백만원이다. 이는 1987년도 보건사회부 예산 527,321백만원의 4.9%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가족의 자원을 보충시켜서 가족의 욕구와 문제를 충족시키고 완화시켜서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면 꼭 필요한 돈이다. 왜냐하면 가족복지 정책으로 가족의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절감이 가능한 사회비용은 형사비용만도 1,316억원으로 추계되기 때문이다.¹¹⁾

아울러 결손가족의 문제중 가사와 아동 및 노인의 보호를 위해서 가정봉사원제도와 탁아사업, 유료양로원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¹²⁾

Ⅶ. 結 論

지난 25여년간 산업화와 도시화는 사회구조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 중에서도 가족구조가 받은 충격은 확대가족의 축소와 핵가족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핵가족의 증가는 단순히 가족과 친족망의 축소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 특히 가족기능을 변화시켜서 가족의 보호와 부양의 기능은 크게 변화되었다. 즉 개별가족의 경우에는 소득이 향상되어서 자원의 양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으나 주소득자나 가사담당자가 상실되는 편부모가족 등 결손가족에서는 확대가족과는 양상이 상이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농업사회에서는 작업장과 거주공간이 일치하고 이웃관계가 대면관계이었기 때문에 관혼상제와 같은 대사와 친제지변을 공동체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었으나 현대 산업사회는 관계망의 축소와 해체에 따른 대체 사회자원을 성숙시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일종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 한국사회에 있어서 가족

11) 金泳膜·李容敎, 前揭論文, p. 75

12) 上揭論文, pp. 116~122

이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은 가족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결손가족은 통계가능한 소득, 노동력 등 사적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직연 등 관계망별 자조조직에의 참여율도 정상가족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제도화된 사회보험등 사회자원도 능력에 따라서 배분되어 결손가족의 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욕구보다는 제도의 실시 편의성을 중심으로 복지제도가 입안되고 권력관계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되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볼 때 가족복지관련제도는 가족의 욕구에 따라서 개선되어야 하고 가족수당, 가족부양수당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복지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편부모가족의 가족문제가 심각하다는 점과 기존복지제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일정소득이하의 아동을 가진 가족에게 가족부양수당을 지급하고 노인부양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의 확대(특히 자영업자에게)와 가족봉사원제 도입, 그리고 탁아사업과 유료양로원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가족복지정책은 축소되어가는 가족의 복지기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문제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시키는 정책 효과를 거둘 것이다.

(접수일자 : 1988년 1월 15일)